

##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사항을 사망말소, 거주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16. 08 . 18.

인천광역시 남구청



1. 처분의 제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
2. 당사자 및 처분내역

업종	업소명	소재지	대표자	위반내용	처분내용 (처분일자)
휴게음식점	지성다방	인천 남구 송의동 128-12	최0을	영업시설물 전부 철거	영업소폐쇄 (2016.08.09)

3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, 제75조
4. 공고기간 : 2016. 08. 18 ~ 2016. 09. 01
5. 고지사항: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한 행정심판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 : 남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(☎ 032-880-4337)